

행정사실무법 총평(제9회)

I. 머리말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의 행정사실무법 문제는 행정심판제도에서 논술형 문제, 행정사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약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사실무법 4문제 중, 1번 논술형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문제였고, 2번 약술형 문제는 행정사법인에 관한 문제였으며, 3번과 4번 약술형 문제는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II. 문제평

문제1의1.

행정심판제도 특별행정심판에서 출제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에 관한 문제로 답안작성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강의는 하였으나,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는 “대판 2012. 9. 13. 2012두3859”를 응용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답안작성을 해야 하는 문제로 행정심판 사례가 아닌 행정법 사례 문제로 행정사실무법의 출제영역을 다소 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2.

행정사법에서 출제되었으며, 행정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예상되었던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출제되었으며,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유형에 관한 문제로 교재에는 수록하였으나 문제화는 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유형은 신청사건, 검사청구사건, 직권사건이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답안작성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에서 출제되었으며,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에 관한 문제로 교재에는 수록하고 강의는 하였으나 문제화는 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차이점은 비송사건절차의 특징을 강의하면서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을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서 답안작성에는 무리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Ⅲ. 맺음말

제9회 시험의 행정사실무법 문제에서 2번 및 3번과 4번 약술형 문제는 답안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1번 논술형 문제의 답안작성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9회 시험에서 특별행정심판 부분이 약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예상은 하였으나, 논술형 문제로 그것도 행정심판 사례가 아닌 행정법 사례로 출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10회 시험공부는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총칙은 기본으로 하고, 특별행정심판 부분도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행정사실무법(제9회)

【문제 1】 甲은 1988. 9. 1. A제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터빈 및 보일러 작동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우측 청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를 요청하였고, 2004. 3. 2. 시약생산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9. 2. 6. 퇴사하였다. 甲은 2009. 3. 6.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 5. 9.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甲에게 통보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르면 장해보상청구권은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물음 1)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물음 2)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문제 2】 행정사법령상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3】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유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4】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1의1. 행정심판의 피청구인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

1. 서설

①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 이외의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①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따라서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3.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법적성질

(1) 심사청구

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재심사청구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법적성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

문제1의2. 처분사유의 추가

1. 서설

처분사유의 추가란 처분청이 쟁송절차 도중에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사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3.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

②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에서 甲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문제2.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의 취소

1. 서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행정사법인의 설립

(1) 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등기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설립인가 신청

①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3) 설립등기

①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의 등기는 법인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설립인가의 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사유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②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를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④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문제3.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유형

1. 서설

①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사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검사청구사건,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사건이 있다.

2. 개시 유형

(1) 신청사건

① 신청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으로 비송사건의 대부분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신청사건은 절차의 대상도 신청에 의하여 정해지고, 신청의 취하가 허용된다.

(2) 검사청구사건

① 검사청구사건은 신청사건이나 직권사건 이외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을 말하며, 검사청구사건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검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다.

② 비송사건절차법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직권사건

직권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사건이다.

문제4.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별 기준 및 차이점

1.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구별 기준

① 비송사건은 분쟁이 없는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사건은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원이 민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놓은 경우와 합목적적 재량에 일임하여 놓은 경우를 구별하여,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긴 재량사항이면 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차이점

(1) 비송사건

① 실질적으로 행정작용이다.

② 반드시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③ 신청이 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재판은 결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없고, 불복은 항고에 의한다.

④ 비공개주의와 서면주의가 지배한다.

⑤ 직권주의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신속하다.

(2) 민사소송사건

① 실질적으로 사법작용이다.

②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한다.

③ 소의 제기에 의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재판은 판결에 의하

며 기판력이 있고, 불복은 항소·상고에 의한다.

④ 공개주의와 구술주의가 지배한다.

⑤ 처분권주의에 의하고 엄격한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엄격·신중하다.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대판 2012. 9. 13. 2012두385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청구를 한 근로자 갑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보상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가, 갑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심리·결정 절차에서 추가한 사유인 ‘갑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에서 처음부터 판단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처분사유 중 하나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